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521043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오상엽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변론 종결 2019. 4. 19.

판결 선고 2019.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5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5. 3.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85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 수급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1. 23. 주식회사 C로부터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 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4억 9,2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급

F은 2017. 2. 10.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보증금액 552,857,672원, 보증기간 2017.2. 10.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계약보증서에 첨부된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

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1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2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무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1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 1) 원고는 2017. 10. 27. F에, F의 자금 미집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으니 2017. 11. 1. 이전까지 이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2) 원고는 2017. 11. 1. F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보증금 지급청구 및 F에 대한 정산 내역 통보

- 1)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2) 원고는 2017. 11. 14. F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율은 28.40%이고 공사대금 54억 9,200만 원 중 타절정산금액이 15억 6,000만 원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새로운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남은 부분(이하 '잔여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억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1) ① 원고가 F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보증약관을 통해 F에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잔여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9억 3,200만 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54억 9,200만 원 - 기성공사대금 15억 6,000만 원)이고, 원고가 잔여 공사부분에 관하여 G과 공사대금을 47억 9,100만 원¹⁾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G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증가한 공사금액은 8억 5,900만 원(= 47억 9,100만 원 - 39억 3,200만 원)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잔여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46억 3,000만 원으로서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한 공사금액은 6억 9,800만 원(= 46억 3,000만 원 - 39억 3,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늘어난 공사금액은 피고의 보증금액인 552,857,672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통보한 2017. 11. 9.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1.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2017. 11. 9.부터 2018. 1. 8.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F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급보증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데, 발주자인 E이 수급사업자인 F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지급보증의무의 면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또한 ②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원고가 F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직접지급 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접지급 합의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8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접지급 합의의 존재 여부

(1)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에게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데(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단서,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2) 원고가 F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과 원고, F이 2017년경 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서 발주자(E)가 하수급인(F)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E, 원고, F이 체결한 합의를 '이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합의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발주자(E)와 원사업자(원고) 및 수급사업자(F) 사이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3항목 또는 4항목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나) 비록 이 사건 합의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으나 제1항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한 점, 위와 같이 부기된 문구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직접지급 합의에 더하여 실제로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없이도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라)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각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효과일 뿐 위 합의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합의 전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나 합의의 효력이 사후에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서면에는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작성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30일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접지급 합의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에 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 552,85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른 심사기간 6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1.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김새미, 판사 신철순

1) G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51억 2,600만 원 중 원고가 F과 무관한 추가공사금액임을 자인하는 3억3,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